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00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백혜련 · 이수진 · 김원이
이주희 · 송재봉 · 박지원
전현희 · 진선미 · 민홍철
부승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처벌대상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입법적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엄벌주의에 기반한 처벌강화 정책만으로는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속성에 부합하는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특별준수사항 부과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정보통신기기 수검의무, 불법촬영물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 수인 및 유지의무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10호, 제11호 신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준수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

10. 불법촬영물·음란물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응할 것
11. 불법촬영물·음란물 등의 시청·제작·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에 응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변경·우회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지 말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사항) ①·② (생략)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준수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불법촬영물 · 음란물의 소</u> <u>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휴</u> <u>대전화 및 컴퓨터 등에 대한</u> <u>보호관찰관의 제출 요구 및</u> <u>점검에 응할 것</u>
<u><신 설></u>	<u>11. 불법촬영물 · 음란물 등의</u> <u>시청 · 제작 · 유포를 차단할</u> <u>수 있는 프로그램을 휴대전</u> <u>화 및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u> <u>에 응하고, 해당 프로그램을</u> <u>제거 · 변경 · 우회 등의 방법</u> <u>으로 방해하지 말 것</u>
<u>10. (생 략)</u>	<u>12. (현행 제10호와 같음)</u>